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3,412,173	14,802,365
일반회계	437,469,130	13,124,074
특별회계	55,943,043	1,678,291
공기업특별회계	19,306,597	579,1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306,597	579,198
기타특별회계	36,636,446	1,099,093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11,534	9,346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006,010	30,180
기반시설특별회계	445,504	13,36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4,970	39,149
자활기금특별회계	2,135,221	64,057
수질개선특별회계	27,565,159	826,95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624,743	108,7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9,771	1,493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3,534	5,8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51,53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